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률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 등〉

-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54호)
-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55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법률의 유효기간 4년 연장	3
2.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공여해제반환재산 활용지원 신설 ..	8
※참고자료	12

I. 제안경위

1. 의안번호 2209954 홍기원의원안

- 1) 발 의 자 : 홍기원 의원 등 52인
- 2) 발의연월일 : 2025. 4. 18.
- 3) 회부연월일 : 2025. 4. 21.

2. 의안번호 2209955 김현정의원안

- 1) 발 의 자 : 김현정 의원 등 15인
- 2) 발의연월일 : 2025. 4. 18.
- 3) 회부연월일 : 2025. 4.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의안번호 2209954 홍기원의원안

현행법은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그런데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 부진 등으로 평택시의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총 86개의 사업 중 15개의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으며 용산 잔류 미군시설의 이전 사업도 아직 한미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현 특별법의 존치가 꼭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주한미군의 평택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

2. 의안번호 2209955 김현정의원안

현행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로 추진되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국방부는 당초 2024년까지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평택, 용산, 동두천 등 11개 미군기지 이전 작업을 위한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등 반환 미군기지 매각이 지연되어 평택시 지원 사업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고,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공여해제반환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향후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 해결과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유효기간 연장

현재 동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 유효기간 내에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YRP 및 LPP)¹⁾을 원활히 시행·완료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아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4년을 연장하려는 것임(홍기원의원안·김현정의원안 법률 제7271호 부칙 제2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② (유효기간) 이 법은 <u>2026년</u>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② (유효기간) 이 법은 <u>2030년</u>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동 법률의 기본 구성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 법률에서는 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으며(법 제9조), 동 특별회계는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로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 지역주민편익시설 지원 자금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1) YRP(Yongsan Relocation Plan) : 용산기지이전계획
LPP(Land Partnership Plan) : 연합토지관리계획

있음.

또한, 법 제8조의2에서는 주한미군 이전사업의 전담부서로 주한미군 이전사업단을 두고,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 집행 및 관리·감독,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관리·운영’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동 특별법의 기본 구성 및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제2장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지원	○ 제4조~제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허가 등의 의제, 부담금의 면제 등 ○ 제8조 :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 ○ 제8조의 2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 -임무 및 기능을 규정 : 실시계획수립, 집행, 특별회계의 관리·운영
제3장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 제9조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 -(세입)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 사용료, 공공자금 예수금 등 -(세출) 토지매수, 시설이전건설비 예수금원리금 상환, 지역주민편익시설 설치, 소음 등 환경 피해복구 등 ○ 제10조 : 차입금 ○ 제11조~제13조 : 잉여금의 처리, 예비비, 세출예산의 이월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 대책 등	○ 제14조~제20조 : 평택시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등 ○ 제21조~제24조 :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등 ○ 제25조~제31조 : 공장, 학교, 외국 교육기관 설치 등 특례조항
제5장 주변지역의 지원 등	○ 제32조~제33조 :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이주대책의 수립 등 ○ 제34조~제36조 : 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 주변지역 주민 등의 우선고용 등, 주변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제6장 보칙	○ 제37조~제39조 :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청문, 과태료
부칙	② 유효기간 : ~'26.12.31

□ 동법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등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세입의 주된 재원인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세부계획(2030년까지)을 가지고는 있으나, 당초 계획보다 공여해제 및 반환 절차 지연 등으로 매각대상 기지 총 47개소 중 27개 기지는 아직 매각이 완료되지 않았음.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세출 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세입	자체	토지매각대	359	392	1,821	5,918	15,179	12,163
	수입	기타수입	12	12	12	7	8	8
	공자기금예수		5,350	3,699	691	-	-	-
계			5,721	4,103	2,524	5,925	15,187	12,171
세출	사업비	이전사업 ¹	145	94	176	1,017	295	539
		이전지원 ²	477	949	1,479	1,203	1,602	1,722
	예수원금 상환		4,324	2,237	-	2,875	12,616	9,683
	예수이자 상환		776	823	870	830	674	226

주 1. 이전사업은 평택기지이전사업(YRP),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비용을 말함.

2. 이전지원은 평택지원, 환경정화, 철거, 이사지원, 사업단 운영비 등을 말함.

자료: 국방부 제출

이처럼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토지매각대가 계획대로 징수되지 않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의 원리금 대부분은 동 법의 유효기간 이후인 2027년 이후 상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²⁾

2) '25년 1분기 기준 약 2.9조원의 공자기금 예수금 및 이자가 존재하여 향후 부지매각으로 상환해야 함.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인해 사업초기 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으로 충당하고, 이후 사업진행에 따라 토지매각대 등 자체세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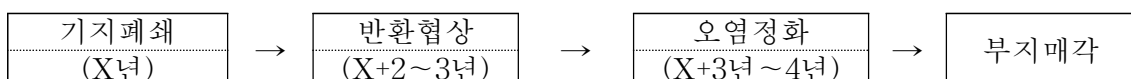
이와 같은 현실적 여건과 상황을 고려할 때, 2026년까지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2026년 이후 동 특별회계가 없어지게 될 경우 이 법의 유효기간인 2026년 이후에도 진행되어야 하는 캠프 마켓 등 11개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정화사업³⁾과 현재 한미간 위치·규모·범위에 대해 협의 중인 용산 잔류 미군시설사업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은 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이미 세 차례나 법률의 유효기간을 연장(2014년 말일까지→2018년 말일까지→2022년 말일까지→2026년 말일까지)한 바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는 미군기지이전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 개정안에 대하여 국방부는, 그 동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으로 충당한 사업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반환기지를 매각해야 하므로 기지이전 후 기지반환 협상, 환경정화 및 매각에 소요되는 기간⁵⁾을

- 3)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부지매각 대상 47개 기지 중 미오염 11개를 제외한 36개 기지에 대한 환경정화사업을 해야 함. 이 중 29개 기지가 반환되어 22개 기지의 환경정화사업이 완료되었으며, 7개소가 진행 중임. 이는 ‘29년한 완료될 예정이며, 미반환된 7개 기지는 반환되는대로 환경정화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4) 주한미군기지 건설사업은 중 평택기지 이전사업은 현재 98.6% 진행 중이며, 72개 프로젝트 중 71개가 완료되었고, 1개 프로젝트에 대해 한미 간 협의 중이며,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사업은 한미 간 그 위치·규모·범위에 대해 협의 중인 단계로 이후 본격적인 건설사업이 예정되어 있음
- 5) 국방부는 기지 이전 후 매각까지는 7년 정도 소요된다는 입장임.



고려할 때 개정안처럼 2030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참고로, 제18대 국회에서 원유철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1811891, 2011. 5. 23.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이 법의 유효기간과 관련한 부칙을 개정하여 당시 ‘2014년 말’에서 ‘2023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법안 심사과정을 거쳐 현행 부칙과 같이 ‘2018년 말’까지로 4년 연장한 바 있으며,

제20대 국회에서 유의동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2003022, 2016. 10. 28.발의)한 개정안에서도 이 법의 유효기간과 관련한 부칙을 개정하여 당시 ‘2018년 말’에서 ‘2025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법안 심사과정을 거쳐 현행 부칙과 같이 ‘2022년 말’까지로 4년 연장하였음.⁶⁾

제21대 국회에서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8, 2020. 11. 19.발의)한 개정안은 이 법의 유효기간과 관련한 부칙을 개정하여 당시 ‘2022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4년 연장하였음.

			(X+7년)
--	--	--	--------

6)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연장기간을 7년으로 하는 것은 너무 길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필요시 추후 재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연장기간을 2022년까지로 수정하여 통과하였음.

2. 지역개발계획수립 시 공여해제반환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제14조 제9호의2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평택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개발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개발계획수립 시 “공여해제반환재산⁷⁾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김현정의원안 제14조제9호의2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평택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다. 1. ~ 9. (생략) <u><신설></u>	제14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확정) ① ----- ----- ----- -----. 1. ~ 9. (현행과 같음) <u>9의2. 공여해제반환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u>

7)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공여해제반환재산”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위원회가 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는 시설과 구역을 말한다.

- 평택 지역개발계획의 목적은 ①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따른 지역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평택지역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과 ② 평택시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의 종합화 및 체계화를 통해 지역의 비전에 부합하는 종합적 지역발전 방안 제시에 있고, 평택 지역개발 계획은 2005년 12월 확정된 이래, 3차례 변경이 있었음.

[지역개발계획 수립 절차 및 규모]

구 분	주요 사항
계 획 수 립 절차	• 지역개발계획(안) 수립(행자부) → 지역개발계획(안) 협의(경기도·평택시) → 지역개발계획(안) 협의(중앙행정기관) → 지역개발계획 확정(행자부장관) → 지역개발계획 통보(중앙부처, 평택시)
규 모	• 총 사업 수 : 89건 (일반회계 87건, 특별회계(국방부) 2건) • (주요사업) 도로, 공원, 복지, 산업, 하수, 관광 등 시설 확충 및 지원

- 개정안은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공여해제반환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한 평택에 대한 지역개발 계획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입법취지인 것으로 보임.
-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국가사업으로, 일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반환받는 미군기지 일부를 매각하여 이를 세입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공여해제반환재산은 동법 제9조(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에 따라 그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하며, 국방부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입법취지와 함께,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 대금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이라는 점, 관계법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4조에서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에 대한 처분 권한을 지자체에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지의 매입경비 보조만을 규정하는 점⁸⁾ 등을 비롯한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및 활용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입장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공여해제반환재산 활용 조항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채원확보에 큰 영향을 주어 원활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지역개발계획에 공여해제반환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 여부 및 기준 등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야 하므로, 공여해제반환재산 활용 조항에 대하여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8)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내의 부지를 도로·공원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가 지자체에 그 처분 권한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지의 매입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04

※ 참고자료

1. 처분대상기지에 대한 연도별 매각 계획

(단위 : 억원)

처분대상기지		'25	'26	'27	'28	'29	'30	'31 이후
계	토지매각대 (기부양여포함)	359	19,849	1,821	5,918	15,179	12,163	14,391
반환 기지	캠프 하야리야등 40개소	359	19,849	1,821	5,918	4,844	4,160	5,933
미반환 기지	캠프 케이시 등 7개소	-	-	-	-	10,335	8,003	8,458
처분 개소수		-	1	2	1	4	6	13

자료: 국방부

2. 평택시 지원 국방부 특별회계 집행 현황(법 제14조 및 제15조 관련)

(단위 : 억원)

구 분	계	평택 주민지원사업	이주단지 조성사업
사업비	12,186	11,495	691

자료: 국방부

3.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관리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상세내용

• 매각/양여 완료 (20개소)

	기지명	소재지	반환면적 (만m2)	반환 시기	매각 시기	매수자
1	택시 에넥스	서울 용산	1	'03.12.	'04.1.	지자체
2	오산기지 (베타사우스)	경기도 평택	6	'04.08.	'06.9.	지자체
3	불스아이#1 훈련장 (일부)	경기도 파주	7,585	'06.06.	'08.2.	개인/법인
4	CPX 훈련장 (일부)	경기도 평택	9	'06.06.	'11.11.	지자체
5	캠프 라파디아	경기도 의정부	14	'07.04.	'23.11.	지자체 등
6	캠프 님블	경기도 동두천	6	'07.04.	'23.11.	지자체 등
7	유엔사 구역	서울 용산	5	'07.04.	'16.12.	LH(양여)
8	캠프 그레이에넥스	서울 동작	1	'07.05.	'16.10.	지자체
9	캠프 에세이온	경기도 의정부	31	'07.05.	'23.2.	지자체 등
10	캠프 홀링위터	경기도 의정부	24	'07.05.	'17.3.	지자체 등
11	캠프 시어즈	경기도 의정부	13	'07.05.	'10.3.	지자체
12	캠프 페이지	강원 춘천	67	'07.05.	'16.4.	지자체
13	캔사스 사격장	경기도 양주	29	'09.10.	'18.5.	개인/법인
14	오클라호마사격장	경기도 파주	6	'09.10.	'18.5.	개인/법인
15	텍사스 사격장	경기도 파주	31	'09.10.	'19.5.	개인/법인
16	와그너 사격장	경기도 파주	36	'09.10.	-	원소유자
17	캠프 하야리야	부산 부산진구	54	'10.01.	'16.6.	지자체
18	캠프워커(헬기장)	대구 남구	7	'20.12.	'24.4.	지자체
19	극동공병단	서울 용산	5	'20.12.	'23.12.	보건복지부
20	니블로 배럭스	서울 용산	3	'79.3 '20.12.	'16.1.	LH(양여)

• 매각/양여 진행 (20개소)

	기지명	소재지	반환면적 (만m ²)	반환 시 기	매각 계획
1	짐볼스 훈련장	경기도 동두천	1,195	'05.09.	진행중
2	와킨스 훈련장 (일부)	경기도 포천	13	'05.09.	진행중
3	모빌 훈련장	경기도 양주	1,117	'05.09.	진행중
4	캠프 콜번	경기도 하남	31	'07.04.	진행중
5	캠프 하우스	경기도 파주	64	'07.04.	진행중
6	캠프 스탠턴	경기도 파주	27	'07.04.	진행중
7	캠프 자이언트	경기도 파주	17	'07.04.	진행중
8	캠프 에드워즈	경기도 파주	25	'07.05.	진행중
9	캠프 게리오웬	경기도 파주	29	'07.05.	진행중
10	캠프 카일	경기도 의정부	15	'07.05.	진행중
11	매향리 사격장	경기도 화성	2,380	'07.05.	진행중
12	캠프 캐슬	경기도 동두천	16	'15.03.	진행중
13	캠프 킴	서울 용산	5	'20.12.	진행중
14	캠프 잭슨	경기도 의정부	17	'20.12.	진행중
15	성남골프장	경기도 하남	93	'20.12.	진행중
16	종교휴양소	서울 용산	2	'20.12.	진행중
17	501정보대	서울 용산	0.5	'20.12.	진행중
18	캠프 레드클라우드	경기도 의정부	83	'22.02.	진행중
19	캠프 룡	강원 원주	34	'19.12.	진행중
20	캠프 마켓	인천 부평	74	'19.12. '23.12. /	진행중

• 미반환 기지 (7개소)

기 지 명	소 재 지	반환대상 면적(만m ²)	기 지 명	소 재 지	반환대상 면적(만m ²)
캠프 모빌(잔여)	동두천시	15	CPX 훈련장 잔여지	평택시	27
캠프 호비(본체)	동두천시	304	알파탄약고	평택시	244
캠프 스탠리	의정부시	245	캠프 케이시	동두천시	1,145
수송부	서울 용산구	8	-	-	-

4. 현행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국방부)의 2020년부터 연도별 상세지원실적

1) 2020년 평택시 주민편익시설사업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3개사업	7건	34,502
주민숙원사업	팽성대교 확장공사(계속사업)	14,500
도시계획시설정비	송탄 중로 1-75호선(계속사업)	1,500
	송탄 중로 1-74호선(계속사업)	1,500
	송탄 중로 1-73호선(계속사업)	1,000
	송탄 중로 1-72호선(계속사업)	1,000
	송탄 중로 1-103호선(계속사업)	3,000
방음시설설치	1식(계속사업)	12,002

2) 2021년 평택시 주민편익시설사업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3개사업	7건	18,011
주민숙원사업	팽성대교 확장공사(계속사업)	3,000
도시계획시설정비	송탄 중로 1-75호선(이월사업)	-
	송탄 중로 1-74호선(이월사업)	-
	송탄 중로 1-73호선(이월사업)	-
	송탄 중로 1-72호선(이월사업)	-
	송탄 중로 1-103호선(이월사업)	-
방음시설설치	1식(계속사업)	15,011

3) 2022년 평택시 주민편익시설사업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2개사업	2건	16,800
주민숙원사업	팽성대교 확장공사(이월사업)	-
방음시설설치	1식(계속사업)	16,800

4) 2023년 평택시 주민편익시설사업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1개사업	1건	3,100
방음시설설치	1식(계속사업)	3,100

※2023년부 사업 종료